



2026-07-03

(26-4807)

페이지: 1/2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문: 영어

통보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1.	통보국가: <u>아랍에미리트</u> 해당되는 경우,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(제 3.2 조 및 제 7.2 조):
2.	담당기관: 산업첨단기술부(MOIAT)
3.	근거 조항 제 2.9.2 조 [X], 제 2.10.1 조 [], 제 5.6.2 조 [], 제 5.7.1 조 [], 제 3.2 조 [], 제 7.2 조 [], 기타:
4.	해당 제품(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.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): 액체 연료(ICS 코드: 75.160.20)
5.	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(제목, 페이지 수, 접근 방법): 디젤 연료 – 바이오디젤 혼합물(B5~B20) 규격에 관한 UAE 기술규정 (9 페이지, 아랍어)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/또는 연락처 링크: 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6/TBT/ARE/26_03470_00_e.pdf 산업첨단기술부(MOIAT) P O Box: 2166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전화: (+971) (4) 2084456 이메일: uaetbt@moiat.gov.ae 웹사이트: http://www.moiat.gov.ae
6.	내용: 디젤 연료 – 바이오디젤 혼합물(B5~B20) 규격 1. 적용 범위

1.1 본 규격은 바이오디젤 규격 B100(UAE.S 5023:2018 + Amd 1: 2020)에 따라 부피 기준 5%~20%의 바이오디젤을 함유하고 UAE.S 477:2021 규격에 적합한 디젤 연료와 혼합한 디젤 연료 혼합물을 다룬다. B5~B20 으로 지정된 이들 혼합물은 다양한 디젤 엔진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. 1.2 혼합물의 바이오디젤 성분(B100)은 규격 UAE.S 5023:2018 + Amd 1: 2020 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. 1.3 혼합물의 디젤 연료 성분은 규격 UAE.S 477:2021 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.
7. 목적 및 근거(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): 소비자 정보 제공, 라벨링; 기만적 관행방지 및 소비자보호; 환경 보호; 품질요건; 국제표준과의 조화; 무역장벽 해소 및 무역 촉진;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
8. 관련 문서: -
9. 채택 예정일: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: 추후 결정
10. 의견 제공 의견 마감일: 2026-09-01 통보일로부터 60 일 [X] 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: 산업첨단기술부(MOIAT) P O Box: 2166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전화: (+971) (4) 2084456 이메일: uaetbt@moiat.gov.ae 웹사이트: http://www.moiat.gov.ae